

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(한글) (한자)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신청내용	자격등급	[]급 치유농업사			
	자격증 발급번호	※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 발급번호를 적어야 하며,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
	발급연월일	※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
	재발급 신청사유	[] 잃어버린 경우			
[] 헐어 못 쓰게 된 경우				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·자료	1. 자격증 원본(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) 2. 사진(규격은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로 합니다) 1장 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(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서류검토

→

자격증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농촌진흥청